레프트뱅크

【 레프트뱅크 】
정 보 공 개 서

레프트뱅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1237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1.10.05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9.19.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20, 1층(대명동)		
대표 전화번호	010-5669-2808	**팩스번호**	053-751-2130
가맹본부 홈페이지	http://leftbank22.whost.co.kr/	**가맹본부 이메일**	pec031210@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Ⅹ. 별지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지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상호</th><th colspan="2">영업표지</th><th colspan="4">주 소</th></tr>
<tr><td rowspan="4">㈜레프트뱅크</td><td colspan="2">레프트뱅크</td><td colspan="4">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20, 1층(대명동)</td></tr>
<tr><td colspan="2">법인 설립등기일</td><td>사업자등록일</td><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 colspan="2">2021.05.24</td><td>2021.5.27</td><td>박도현</td><td>010-5669-2808</td><td>053-751-2130</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170111-0821216</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709-86-02619</td></tr>
</table>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관계</th><th>이름/상호</th><th>영업표지</th><th colspan="3">주 소</th></tr>
<tr><td rowspan="3">대표이사</td><td rowspan="3">박도현</td><td rowspan="3">레프트뱅크</td><td colspan="3">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20, 1층(대명동)</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010-5669-2808</td><td>010-5669-2808</td><td>053-751-2130</td></tr>
</tabl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레프트뱅크 돌계단점	레프트뱅크	2021.05.24	대구시 현충로 252-1 1층	엄지연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레프트뱅크	
상 호	레프트뱅크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이나 입점하는 건물명을 사용하여 가맹점 명칭을 부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레프트뱅크 LEFT BANK	등록: 제40-1941764-0000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6,268	88,317	87,950	262,506	38,765	37,950
2022년	338,095	230,963	107,131	428,326	20,493	19,180
2023년	355,501	207,060	148,440	424,135	18,691	41,30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도현	대표이사	2022.06.04~현재	레프트뱅크 대표이사	경영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레프트뱅크]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레프트뱅크 (상표권)	서비스표	2022.12.01	등록 4019417640000	주식회사 레프트뱅크	2032.12.01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 영업표지, 실사, POP 등 당사가 허락한 상품·용역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레프트뱅크] 가맹사업 현황

1. [레프트뱅크]를 시작한 날: 2018년 05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0년 10월 14일)

2. [레프트뱅크]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레프트뱅크	레프크뱅크	엄지연	2018.05.14.~2021.5.24	대구 동구 신암남로81
주식회사 레프트뱅크	레프트뱅크	엄지연	2021.05.24.~2022. 06. 24.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44, 1층(대명동)
주식회사 레프트뱅크	레프트뱅크	박도현	2022.06.25.~2023.06.08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44, 1층(대명동)
주식회사 레프트뱅크	레프트뱅크	박도현	2023.06.09.~현재	대구광역시 남구명덕로34길 20, 1층(대명동)

3. [레프트뱅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레프트뱅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음료	커피 외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레프트뱅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9	3	12	11	1	21	21	0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12	9	3	12	11	1	21	21	0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레프트뱅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7	0	0	0	9
2022	9	2	0	0	0	11
2023	11	11	1	0	0	21

6. [레프트뱅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레프트뱅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21	202,057	20,206	442,495	44,250	54,100	5,410	18곳 산출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21	202,057	20,206	442,495	44,250	54,100	5,410	18곳 산출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전국의 가맹점 중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 실제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3곳(남산점, 서대구화정파크점, 범어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8. [레프트뱅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레프트뱅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1개	62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자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차액가맹금 수취(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3,150	-	-	-

광고	-	-	-	-	-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 해당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레프트뱅크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1〕개월 소요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가입은 가맹계약 시 납입하는 예치금에 대해서 보장이 되며 가맹 계약건에 대해 계약단위로 보험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절차 및 보장 범위, 지급 조건 등은 서울보증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당사는 먼저 보증보험증권을 귀하에게 발급하고, 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귀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기관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 기관의 약관에 따라 진행 방식 및 내용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	-	-	-	-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레프트뱅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가입비	5,500	계약 당일 은행 예치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5,500	계약 당일 은행 예치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현금)보증금	3,000	계약 당일 은행 예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상품 원 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처리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4,000
가입비	5,500
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33㎡(1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A)	선택사항 모두미포함	[71,280]	[7,128]			
총계(B)	선택사항 모두포함	[86,680]	[8,668]			
인테리어 (내장공사)	협력업체(미지정)	20,900	2090	가맹점 사업자 직접 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타일, 설비, 목공, 내부금속, 도장, 전기, 청소, 시트지 등
시스템바(매장	협력업체(미지	6,600	660		공사 전	각 린서제품

에 따라 상이함)	정)				계약 취소	제작 스텐상판, 제작스텐싱크, 피처린서,디퍼웰,클린포터기, 아이스빈 등
외부 파샤트,테이크아웃 바, 외부금속 (매장에 따라 상이함)	협력업체(미지정)	5,500	550		공사 전 계약 취소	외부 마감금속, 상부금속, 슬라이딩도어, 전면 도어, 테이크아웃 금속 등
주방집기	협력업체(미지정)	27,500	2750		상품 미공급시	커피머신, 글라인더, 블랜더,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 등
기자재(기타)	협력업체(미지정)	4,950	495		상품 미공급시	주문렉,바스푼, 빨대통,전자레인지,에어프라이기 등 250여종
간판	협력업체(미지정)	5,500	550		공사 전 계약 취소	외부 4미터 이하 메인 간판
Pos 장치	가맹본부	협의	협의		상품 미공급시	임대관리
내부 led 메뉴판 (대당)	협력업체(미지정)	330	33		상품 미공급시	메뉴리스트 표시장치
(선택) 아이스크림기계	협력업체(미지정)	5,500	550		상품 미공급시	(선택) 소프트아이스크림or아포가토 or과일요거트메뉴추가 매장
(선택) 쇼케이스	협력업체(미지정)	2,750	275		상품 미공급시	(선택) 과일보관,케익 보관용 쇼케이스
(선택) 내부 전자메뉴판 (대당)	협력업체(미지정)	1,650	165		상품 미공급시	(선택) 내부 상당 메뉴소개 그래픽 메뉴소개장치
(선택) 글라스폴딩도어	협력업체(미지정)	5,500	550		공사 전 계약 취소	(선택)외부 마감 글라스 폴딩도어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철거공사,음향시설,상하수도,전기증성,화장실,냉난방시설,도시가스,외부테라스,외장공사,소방공사,오픈행사,각종인허가,어닝,온수기,CCTV,전화,인터넷,시설외창고공사,가구,별도공사추가 4미터이상 간판비용 등은 별도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구 외 타지역은 인테리어 비용이 10% 추가 됩니다.

◇ 인테리어 자체시공시 인테리어 디자인비용 3.3m2 당 금 오십오만원(550,000 부가세 포함) 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당사가 정한 지정업체를 통하여 설치/구매 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메뉴얼사용료 외 별도로 도면 설계비를 추가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레프트뱅크 가맹사업의 통일성, 품질 유지를 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도면과 다를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시공업체의 최소역량 확인을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의 실적(커피전문점 1건 또는 유사업종2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맹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행한 도면, 현장 사진, 공사실적신고서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소실면적33m2 이상 (단,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상권 및 점포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 후 오픈 가능)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등 판단 귀하의 책임 하에 최적의 점포 입지를 선정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레프트뱅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 당사는 가맹금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27만5천원	다음 월 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20%, 가맹점사업자 80%)	전체가맹점 균등납부 (다음 월 5일)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 필요시 지급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개별청구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1인 1일 기준 165	개별청구	실비로 반환 안 됨 수시교육		수시교육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실시 될 경우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본부: 변경비용의 25% 귀하: 변경비용의 75%	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		경영방침, 유행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미정)	-	교체 보수 완료 5일 전 까지 지급	-		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나머지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진행 전/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 진행 후에는 반환 불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POS 사용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이율 20%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레프트뱅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수시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레시피 등 영업매뉴얼 준수여부 및 운영 상태, 대 고객 서비스 제공 상태, 매장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점검/평가 결과 보수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이 운영에 대한 점검 기타 가맹점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정한 직원이 가맹점으로 방문하였을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재가맹비	없음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동의를 받은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영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가입비 5,500,000원(부가세포함), 교육비 5,500,000(부가세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상호.간판 상품, 기타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내 수 이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 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귀하가 [**레프트뱅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귀하에게 공급하는 상품, 원.부재료의 주요 품목은 [별지4]에 첨부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레프트뱅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레프트뱅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가 [레프트뱅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4 참조]

◇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4]의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상품 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지 4	별지 4	서면, 구두 공지	23년 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레프트뱅크	없 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상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귀하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 250m를 원칙으로 함(해당 지역 내 특수상권 제외)	

◇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푸드코트,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의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1. 왕복 6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대형)상권 및 지방 중심(도심)상권
5.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연급매장, 백화점, 할인점, 지하철역내 등에 Shop in Shop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 외 영업활동에 대하여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레프트뱅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① 오프라인 전용 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직영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어 위 비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온라인 전용 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레프트뱅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계약갱신일로부터〕[1]년입니다.

◇ 위에서 정한 계약기관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의 영업 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사항 다."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6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갑"과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7조 2항
○ "을"일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7조 2항
○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37조 2항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 매뉴얼 미 준수 및 가맹점 관리감독 규정 등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7조 2항
○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7조 2항
● 사전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들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사전동의없이 전포의 소재지,상호,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거부 하는 경우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이내 시정하지	
●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점검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한반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 3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 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계약의 합의해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 가맹점에게 계약서 36조, 37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입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 가맹비 면제, 계약이행보증금 승계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계약서 준수	가맹계약서 준수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계약서 준수	가맹계약서 준수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중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기 또는 가족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레프트뱅크**]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가족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레프트뱅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레프트뱅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22:00	주6일 이상 영업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별도 협의	별도 협의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서비스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품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가맹점을 점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통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레프트뱅크]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 부담	
공동광고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 80%/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 → 1주일 내 납입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
공동판촉	공동 판촉활동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 → 1주일 내 납입
	개별 판촉활동	-	관련 제작실비 전액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 시 전체 적용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하며, 70% 미만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광고/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을"은 독자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임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

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을"이 가맹계약서 제38조의 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에 1일당 [10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변심 등 "을"의 귀책사유로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다음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최초 가맹금을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그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한다.

해약요청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한24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	2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맹점 개점 전까지	300만원
개점 관련 발생되는 인테리어,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③ "을"의 귀책사유(계약기간 위반 등)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책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해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평균 월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15일이 남은 잔여 계약기간인 경우 11개월로 계산)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가맹계약서 제39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위약벌[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이 "갑"의 영업비밀, 영업노하우를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 "갑"에게 위약벌[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필수품목 및 당사가 별도 통지한요구품목)을 자점매입 또는 다른 곳에 유통하거나,“갑”의 승인을 받지않은 물품을 자점 매입하여 상품(메뉴)으로 판매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갑”에게 위약벌로 을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필수품목매입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00p~0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 오픈 시	오픈일로부터 3일간	110만원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전화052-224-77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전화052-224-77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레프트뱅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레프트뱅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경영상의 필요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 협의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 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레프트뱅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7시간(3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1인 1일 기준 165,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1인 1일 기준 165,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요청시 실시
재교육		1인 1일 기준 165,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 기준

◇ 당사는 직영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관리팀(Tel : 010-5669-280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1] 용역/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원부재료, 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3]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VAT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상품판매 가격

MENU

추가 샷추가 0.5 / 설탕시럽 1.0 / 휘핑 1.0 / 무유지방 0.5 / 바닐라 1.0

Coffee

	R	L
아메리카노	2.0	2.8
꿀 아메리카노	2.7	3.5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2.7	3.5
카페라떼	3.0	3.8
바닐라라떼	3.8	4.5
헤이즐넛라떼	3.8	4.5
제로 바닐라라떼	3.8	4.5
ICE 레트로 밀크커피	3.5	4.3
Best 바닐라딜라이트	4.3	5.2
Best 헤이즐넛딜라이트	4.3	5.2
돌체라떼	4.0	4.8
카라멜라떼	4.0	4.8
코코넛라떼	4.0	4.8
슈크림 샷라떼	4.5	5.3
ICE 바닐라크림라떼	4.5	5.3
ICE 바닐라 소이라떼	5.0	두유
ICE 헤이즐넛 소이라떼	5.0	두유
ICE 비엔나	4.0	

Juice

	R
바나나	4.5
딸기바나나	5.0
토마토	5.5

Decaf/dutch

	R	L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3.5	4.3
디카페인 라떼	4.5	5.3
더치 아메리카노	3.5	4.3
더치 라떼	4.5	5.3

Latte non coffee

	R
초코라떼 (초코딸기 4.8)	3.8
민트초코라떼	4.0
녹차라떼 (녹차딸기 4.8)	4.0
Best 미숫가루라떼	3.8
고구마라떼	3.8
단팥라떼	4.0
피스타치오 라떼 (피스타치오딸기라떼 4.8)	4.0
옥수수라떼	4.5
토피넛라떼	4.0
로얄밀크티	4.0
Best ICE 딸기라떼	4.0
ICE 큐브치즈라떼 (딸기큐브치즈 5.5)	4.5
ICE 오레오퐁라떼	4.5
ICE 죠리퐁라떼	4.5
ICE 흑당라떼 (흑당버블밀라떼 5.0)	4.0

Ade only ice

	R	L
레몬에이드	3.9	4.7
청포도에이드	3.9	4.7
Best 애플망고에이드	3.9	4.7
자몽에이드	4.5	5.5
체리에이드	4.5	5.5
패션후르츠에이드	4.5	5.5

Mojito only ice

	L
애플모히또	5.0
Best 자몽모히또	5.5
청포도모히또	5.5
체리모히또	5.5
패션후르츠모히또	5.5

Tea

	R	L
Best ICE 블랙피치 아이스티	3.5	4.3
Best ICE 감귤 아이스티	4.0	4.8
ICE 식혜	3.0	3.8
스크류 릴렉서	4.3	
유자차	3.7	
자몽티 / 레몬티	4.0	
유자민트티	4.3	
애플유자티 / 블랙유자티	4.3	
허니자몽블랙티	4.5	
얼그레이 / 루이보스	3.0	3.5
캐모마일 / 페퍼민트	3.0	3.5

Frappucino

Best 베리	4.5	초코칩 (초코 딸기 5.5)	4.5	Best 미숫가루	4.5	통팥소다	4.5	꿀 참외	4.5
Best 쿠키	4.5	민트초코칩	5.0	냉마	5.0	요거트플레인	5.0	꿀 배	4.3
딸기쿠키	5.5	자바칩	5.5	녹차 (녹차 딸기 5.5)	4.5	블루베리	5.0	슈크림딸기	5.5
Best 밀크쉐이크	5.0	커피 (코코넛커피 5.0)	5.0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딸기 5.5)	4.7	망고딸기	5.0	슈크림죠리퐁	5.5
초코쉐이크	5.0	큐브치즈	5.0	옥수수	5.0	Best 삼구복숭아	5.5	슈크림쿠앤크	5.5
코코볼쉐이크	5.5	딸기치즈	5.3	토피넛	4.5	코코넛	4.5	오레오퐁	5.5

[별첨5]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